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 영 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9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규정(안 제4조의14제2항 신설)

- 1)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4 제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를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를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14(<u>고용보험료 지원 대상</u>)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u>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u>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4조의14(<u>보험료 지원 대상</u>) ①----- ----- ----- <u>대상은</u> ----- ----- ----- ----- ----- -----.
1. ~ 3. (생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제도약과	
연 락 처	(044) 204 - 7857